

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(사)에코맘코리아 간의

기관업무 협약서

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(사)에코맘코리아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.)는 「서울시민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」를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상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양 기관은 상생발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인력지원 및 기술적 자문, 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① 보건환경관련 시책연구결과 대시민 홍보
- ② 전문가 상호 교류 및 프로젝트 공동 추진
- ③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공동 수행
- ④ 민감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- ⑤ 시민밀착형 시책연구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협력
- ⑥ 기술세미나,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- ⑦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

2. 상대기관의 장비와 시설에 대한 공동사용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, 이용의 방법과 조건은 시설을 보유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.

3. 양 기관은 영향력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구·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, 수행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4.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학술활동, 세미나, 교육 등 각종 행사에 대하여 주최, 주관, 후원 등으로 공동 참여하고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5. 위 각 호에서 발생된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개인사항 및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5조(사전고지) 양 기관은 협약서상 협력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쌍방 간 고지하여 필요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.

제6조(효력 및 기간) ①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되며,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
②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,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7조(협의 조정 및 협약 이행)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)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 대표가 서명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2. 12.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
원장 정 천

26 31

(사) 에코맘코리아
대표하지원

하지원

※ 양 기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